

시보

| | |
|--------|---------|
| 선 람 | 기 관 의 장 |
| | |

제1217호 2022. 3. 18. (금)



시화-철쭉



시조-갈매기



시목-느티나무

고 시

- 삼척시 고시 제3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----- 2
- 삼척시 고시 제3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----- 5
- 삼척시 고시 제35호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----- 7

공 고

- 삼척시 공고 제345호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- 9
- 삼척시 공고 제347호 도시관리계획(시설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안 재열람 공고
----- 16

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공 람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발행 : 문화홍보실 (전화 : 570-3229, FAX : 570-3132)

삼척시 고시 제2022 - 33호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3. 15.

삼척시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: 강원도 삼척시 뒷나루길 142 (교동) 외 3건

| 종전주소 | 도로명주소 | | | 도로명 | |
|---------|-------|-----|----|-----|------|
| | 주소 | 고시일 | 사유 | 고시일 | 부여사유 |
| (별지 참조) | | | | | |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(☎570-3946~9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내역

| 구분 | 순번 | 도로명주소 | | 고시일 | 사유 | 도로명고시일 | 도로명 부여사유 | 비고 |
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| 종전주소 | 도로명주소 | | | | | |
| | | 계 | 4건 | | | | | |
| 부여 | 1 | 강원도 삼척시 괴동 315 | 강원도 삼척시 풍나부길 142 (괴동) | 20220315 | 건물신축 | 20200626 | 지역시정(후진)영장 활용 | |
| 부여 | 2 | 강원도 삼척시 근대면 용채대 60-1 | 강원도 삼척시 근대면 삼척로 2181 | 20220315 | 건물신축 | 20200626 | 구 7개 시도 연결 구간으로 기존 도로명 활용 | |
| 부여 | 3 | 강원도 삼척시 중산동 116-2 | 강원도 삼척시 수로부인길 183-55 (중산동) | 20220315 | 가설건축물 | 20200626 | 해당 구간내 광범위명 활용 | |
| 부여 | 4 |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 11 |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미로면법로3길 51-166 | 20220315 | 건물신축 | 20200626 | 일반번호명지정용(미로간면로분기) | |

삼척시 고시 제2022 -34호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3. 18.

삼척시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: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주지로 658 외 4건

| 종전주소 | 도로명주소 | | | 도로명 | |
|--------|-------|-----|----|-----|------|
| | 주소 | 고시일 | 사유 | 고시일 | 부여사유 |
| (별지참조) | | | | | |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(☎570-3946~9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내역

| 구분 | 순번 | 도로명주소 | | 고시일 | 시유 | 도로명고시일 | 도로명 부여사유 | 비고 |
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| 종전주소 | 도로명주소 | | | | | |
| | | 계 | | | | | | |
| 부여 | 1 |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주저리 124-2 |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주저로 668 | 20220318 | 가설건축물 | 20200626 | 중점 부활장구 적용사용(노곡면주저리) | |
| 부여 | 2 |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가노리 604-1 |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두타로 2011-7 | 20220318 | 건물신축 | 20200626 | 지형지물(두타산)정리활동 | |
| 부여 | 3 |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흥하리 220 |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흥하리번1길 21 | 20220318 | 건물신축 | 20200626 | 입력번호방식 변경사용(흥하리번길분기) | |
| 부여 | 4 |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학리 1021 |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내림길 267 | 20220318 | 건물신축 | 20200626 | 지역명(동학리)이동명(내림)사용 | |
| 부여 | 5 |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동리 329 |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동길 242-9 | 20220318 | 건물신축 | 20200626 | 지역지명(삼동,근제)복합 활용 | |

삼척시 고시 제2022 - 35호

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

『도로명주소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3. 18.

삼척시장

- 고시일 : 2022. 3. 18. (금)
- 고시방법 : 시보, 시홈페이지
- 고시내용 :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1건 (조서 및 위치도 참조)
- 도로명의 부여·변경 절차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·변경신청 | 신청을 받은 날부터 ⇒ 10일 이내 | 주민 의견 수렴 공고 | 주민 의견 수렴한 날부터 ⇒ 30일 이내 |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| 심의 마친 날부터 ⇒ 10일 이내 |
|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| | 14일 이상 | |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| |

<변경의 경우>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공고 및 신청인 통보 | 공고한 날부터 ⇒ 30일 이내 |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(주소사용자의 1/2 이상) | 서면 동의 받은 날로부터 (서면 동의 생략 포함) ⇒ 10일 이내 | 고시 및 신청인 통보 |
| | |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(주소사용자의 1/2 미만) | 서면 동의 만료일로부터 ⇒ 10일 이내 |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|
| · 심의 결과 · 변경 내용 및 절차 | | | |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결과 통보 |

※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

※ 변경 및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사용할 수 없음

※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 위원회의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.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 지적정보부서(☎033-570-394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위치도

| 조서 | 구분 | 도로명 | 도로위계 | 관할행정구역 | 도로구간 | | | 기초간격 (m) | 기초번호 | 변경사유 |
|----|----|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변경 | 동안로 | 로 | 미로면 | 시작지점 | 끝지점 | 길이 (m) | | | |
| | | | | | 내미로리 819-12 | 내미로리 179 | 214 | 5 | 544-1→ 544-22 | 1차종속구간 신설 |



위 치 도

※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 생략.

삼척시 공고 제 2022-345호

「삼척시 건축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삼척시 건축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3월 16일

삼 척 시 장

1. 개정이유

건축법 시행령의 개정(2021.11.2.)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반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(안 제40조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(참조 건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의견

※ 의견제출 및 문의처

- 주 소 : 우 25914 삼척시 대학로 81(교동) 삼척시청 건축과
- 전 화 : 033-570-3452 / FAX : 033-570-3146

4. 그 밖의 사항

이 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(www.samcheok.go.kr) 입법/공고/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,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건축과(전화 033-570-345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1부.
2. 관계법령 1부.
3.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. 끝.

삼척시 조례 제 호

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 제5항 본문 중 “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.6배(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2배)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.8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25배) 이상”을 “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5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25배) 이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<p>제40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”는 <u>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.6배(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2배)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.8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25배) 이상으로 한다.</u></p> <p>⑥ (생략)</p> | <p>제40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----- -----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5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25배)----- ----- -----</p> <p>⑥ (생략)</p> |

[붙임 2]

관계법령

□ 건축법시행령

제86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(正北)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.>

- 1.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.5미터 이상
- 2.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5. 7. 6., 2016. 5. 17., 2016. 7. 19., 2017. 12. 29.>
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(자동차·보행자·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, 도로에 공공공지, 녹지, 광장,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·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)에 접한 경우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,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

나. 「경관법」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

다.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

라.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·공고하는 구역

- 2.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(법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)의 경우
- 3.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

③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 다만,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. <개정 2009. 7. 16., 2013. 5. 31., 2015. 7. 6., 2021. 11. 2.>

- 1. 건축물(기숙사는 제외한다)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(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) 이하로 할 것
- 2. 같은 대지에서 두 동(棟)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(한 동의 건축

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. 다만,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(冬至)를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(日照)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가.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.5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25배)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

나.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(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)의 주된 개구부(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)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5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25배)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

다.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

라. 채광창(창높이가 0.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)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

마.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[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(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)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]에는 4미터 이상

[붙임 3]

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

▣ 자치법규명 :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▣ 의견제출자 :

| 개 정 안 | 검 토 의 건 | |
|-------|---------|------|
| | 수정안 | 검토사유 |
| | | |

삼척시 공고 제2022-347호

도시관리계획(시설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안 재열람 공고

삼척시 공고 제2021-337호(2021. 3. 17.) 및 제2021-1028호(2021. 9. 13.)로 각각 열람 공고한 '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안'의 내용이 이후 진행된 관련 기관·부서 협의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면서 일부 변경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내용에 대한 재열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3월 18일

삼척시장

- 가. 주요 변경내용: 기반시설 설치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
 - 소로2-20(근덕면 교가리) 폭원 확장 및 노선 합병: 연장 442m
 - 삼척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(A=114,802㎡) 및 기반시설 설치
- 나. 열람기간 및 장소: 2022. 3. 18. ~ 2022. 4. 1.(15일간), 삼척시청 도시과
- 다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및 도면: 열람장소 비치
- 라. 열람 기간 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안의 내용에 대하여 삼척시장(도시과장)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공고 관련 기타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(☎ 033-570-387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